

정정신고(보고)

2026년 9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계약
삼성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8.12.28
3. 정정 내용 :
 - 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, 법 사항 반영
4. 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: 아니요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8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.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· 지정참가회사, 일반사무관리회사,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 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22조(설정단위)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,000좌 로 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,000좌 로 한다
부칙	(추 가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(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, 법 사항 반영)